잘못된 편견, 오도된 사회인식

4만여명의 환자, 정신병원등 수용시설에 감금

환자인권 보장위해선 '의료편의주의' 극복돼야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신질환과 인권

박 균 성
〈법대교수 법학〉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4(死)월 4(死)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하여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정신질환과 인권'에 관한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있었다.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한 것은 우리 국민이 4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정적 편견이 합리적 이유가 없듯이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위험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격리수용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정신질환은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정신질환중에는 증상에 따라 일부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높지 않다. 정신질환의 치료는 다른 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고 완치를 위하여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요하지만 오늘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노력만 하면 완치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정신질환의 인권은 국제적인 인권선언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해서 법이론상으로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에게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사회에 복귀할 권리, 취업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에 관한 법은 이러한 원칙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치료보다는 격리수용이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정신질환의 치료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유보되었고, 정신질환자는 일반 장애인 보다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경제적 부담때문에 얼마 가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자는 처음에는 좋은 시설을 갖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드는 정신병원으로 그리고 보다 저렴한 정신요양원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소나 다름없는 시설로 버려져 쇠창살에 갇힌 채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93년 현재 정신병원에 1만6천9백19명, 정신요양원에 1만7천6백32명, 부랑아 수용소에 약 4천명(추정), 기도원에 약 5천명(추정)이 수용되어 총 4만4천명이 강제수용되어 있다. 정신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중 3년이상 장기로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63%나 된다고 한다. 선진외국의 경우에 환자자신의 의사에 의한 입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환자 자신의 의사에 의한 입원은 조금 과장하여 말한다면 한 건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환자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을 강제입원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자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도 정신질환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입원이다. 선진외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에 준하여 엄격한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수용시설내에서의 가혹행위등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정확한 조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언론에 의해 폭로되는 것으로 부터 강제수용된 정신질환자는 인간이기를 거부당하고 있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정신질환자수용시설중에는 감독기관의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지역이 있다는 것도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려는 국가와 정신의료종사자와 국민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보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하고 정신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의료종사자는 개인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정신의료와 보호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환자의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의료편의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국민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고 인간애에 기초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에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될 때 완결되는 것이므로 일반 국민의 정신질환자를 포용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정부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한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강단시론

허 종
〈외대교수 영문학〉

오솔길을 생각하며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셸리도 노래했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개나리, 진달래등이 앞을 다투어 봄을 단장하고 있다. 삭막하던 도시공간에서 어느틈에 비집고 들어오는 봄소식을 따라 곳곳에 울긋불긋한 봄꽃을 보게된 것은 하나의 축복이리라.

봄과 함께 약동하는 생명력

콘크리트와 철골구조로 뒤덮인 서울 한복판에서도 요즈음 갖가지 꽃을 쉽사리 대하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흐뭇하게 하는 것은 경희의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혜택이다. 서울, 수원, 광릉의 모든 캠퍼스 구석구석에 도시와는 떨어진 원초적 향기를 풍기는 풀내음, 나무내음은 매일의 도시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삶의 의욕을 북돋우기에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다. 비좁은 연구실 안의 검난, 춘난, 알록제비, 군자란등 애써서 가꾸는 가냘픈 꽃들과 달리 탁트인 자연을 벗하며 바람 부는대로, 햇빛이 비치는대로, 힘차게 자라나는 새싹과 꽃망울들, 물오른 나뭇가지들의 새눈을 보며 약동하는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다 마치 풋풋하고 싱싱한 대학 신입생의 첫 등교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나만의 감상은 아니리라.

동양의 지혜로서 널리 읽히는 채근담에 이러한 구절이 생각난다. 즉 '꽃이 화분 속에 있으면 생기가 없고, 새가 조롱 속에 들면 천연의 묘한 정취가 없다. 산속의 꽃과 새는 여러가지로 어울려 아름다운 문채를 짜내고 마음대로 날아다녀 한 없는 묘미를 깨닫는다'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자연을 따라 사색하고, 그 이치를 깨달으며 호연지기를 얻는 것만 못하다. 갖가지 문명의 이기에 접한 현대인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바로 온실속의 생활, 화분속의 생활인 것이다.

최근에 웅장하게 완성된 수원캠퍼스의 도서관 입구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천하를 바로 세운다'라는 글귀가 있어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운다. 우리의 공간인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가졌을진대 반드시 숙고해야할 일은 글과 실험을 통한 학문만이 아니라 자연과 벗하며 사색의 시간을 갖고, 선현들과 지혜자들이 남긴 글들을 심도있게 연구함으로써 인성과 지성을 갖춘 조화로운 상아탑이 되는 것이다.

메마른 구성원들의 마음

그런데, 매우 아쉬운 점은 이 아름다운 캠퍼스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 공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 뒷산(고황산이든 제비봉이든) 또는 호수가(선동호든 신갈호수이든) 어디에도 쉴 만한 곳, 사색할 만한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오솔길과 벤취도 없으며 곳곳에 입산금지 표시가 학교 구성원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듯하여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자연의 숨결, 산비스런 생명력을 눈여겨 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이용하면 이곳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터전이 될 것이다.

35, 6년전 바쁜 일정 속에서 도심의 한복판을 지날때에 은은한 커피향과 베토벤의 바이올린곡에 이끌리어 발걸음을 멈춘 후 그곳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과 그 향기를 기대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그 후 눈내리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이 황금물결을 이루는 가을의 경복궁 뒷길, 단풍을 밟으며 인생의 무상을 생각하던 위스칸신의 한적한 길, 7백년 이상 묵은 거목들로 이뤄진 숲속 안개 속을 조깅하던 캠브리지의 지저스· 그린, 이 모든 길들이 나의 인생에 낭만과 사색과 집념을 일궈낸 길들이었고 추억의 길이며 또한 이상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의 자연조건을 최대로 살려서 조화로운 오솔길을 개발하고, 중간중간 쉼터도 만들고, 배움터도 만들어 칸트의 사색의 숲이 되게하고 베토벤의 창작의 숲이 되게하자는 제안은 나의 화려한 공상일까?

소위 닭장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도시인들이 자연을 접하고 자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발전이고 혜택이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도덕율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자연의 조화가 올바른 사회를

자연의 조화를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생활의 조화를 배움이며, 남을 나 보다 낫게 여기고, 나의 올바른 자리매김으로 각자가 있어야할 자리에서 자신을 헌신하는 법을 배워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19세기의 명지휘자인 미카엘 고스타경의 최종 리허설 시간에 피콜로 연주자 한명이 갑자기 심술과 장난기가 발동하여 연주를 중단하였다. '1백명의 단원 중 작은 악기로 연주하는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연습이 시작되자 곧 바로 지휘자인 고스타경은 "피콜로는 어디갔나? 왜 피콜로 소리가 안들려? 이래가지고는 음악이 안되지 않나?"하고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다. 비로소 그 피콜로 주자는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평소의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화음을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각자가 중요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는 봄의 교향악이 울려퍼지는 캠퍼스의 자연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그곳에서 조화의 멋을 배우게 되리라.

하늘에는 별이 있어 아름답고,
땅에는 꽃이 있어 아름답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 아름답다.

세상을 넓고 사랑스럽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하겠다.

인권범죄행위에 면죄부 준 꼴

고문사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견해

손 민 아
〈민가협 간사〉

지난 3월 15일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는 구미유학생사건으로 11년째 수감중인 황대권씨(41세)가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고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으로서 그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황대권씨는 85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안기부에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63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불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사건이 조작되어 장기구금중인 고문피해자이다. 지난해 7월 7일 황대권씨를 비롯해 장기수 8명은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등을 서울지검에 처분하였다. 이어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재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지난 1월과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유신과 5·6공 군사독재정권당시 가장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잔혹한 고문을 당한 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고문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시금 이러한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후의 권리 구제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또한 황대권씨는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서 "우리 헌법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2조 제2항)'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헌법 제30조)'등을 통해 고문금지의 원칙을 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은 고문 등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7년)를 규정해 두고 있어,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은 곧바로 이러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주장하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최상위법인 헌법에 근거해 하위의 법률과 제도가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의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소원의 핵심 제기사항인 '고문범죄 공시시효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채, 또한 전원재판부에 넘겨보지도 않고 각하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의 본분을 저버린 처사이고 헌법재판소의 존재근거를 망각해버린 행위이다.

90년 우리 정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바 있다. 우리가 이미 가입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뿐 아니라 대다수 국제법을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가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 등 다수의 영미법계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이에 공소시효제도를 두지 않고, 특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를 불문하고 다수의 나라들이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와같은 국제법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 정부가 요란하게 내세우는 '세계화'의 취지도 걸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 30여년간 군사정권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감금, 고문 등 무수한 인권범죄행위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탐라기행

알고보면 우리들 몸에는 또다른 '문화' 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 라는 문화입니다. 종종 잊고 사는 내 나라 땅 '제주'
한때는 '제주' 도 하나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는 아직도
탐라국이라는 이름의 문화와 역사가 본래 모습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제주의 풀한포기, 바람 한점도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분들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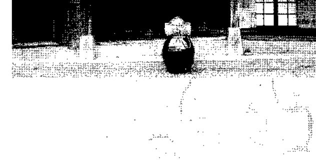

대한항공은 서울과 부산에서 매일 35편 이상 제주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및 문의 : (02)756-2000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